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민병주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493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2월 06일

발 의 자: 민병주 의원(1명)

찬 성 자: 고광민, 김경훈, 김규남,
김길영, 김동욱, 김영철,
김용일, 김원중, 김원태,
김재진, 김지향, 김춘곤,
김형재, 김혜영, 남궁역,
남창진, 문성호, 박영한,
박칠성, 박환희, 송경택,
아이수루, 옥재은, 유정인,
, 유정희, 윤기섭, 이경숙,
이봉준, 이상욱, 이영실,
이은림, 이종태, 최민규,
최재란, 최진혁, 허·훈,
홍국표, 황철규 의원(38
명)

1. 제안이유

-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건축물 층수제한으로 인해 획일적이고 일률적 층수의 건축물이 계획되어 주거지 경관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,
-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제한을 폐지하고 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건축물 층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건축물 계획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거지 경관 및 도시미관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층수제한을 완화하도록 함(안 제34조 제2항, 제34조제3항 삭제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2항 중 “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층수를 15층 이하로 정할 수 있다.”를 “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층수를 완화할 수 있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4조(제2종일반주거지역내 가 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<u>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9 조제1항 각 호의 임대주택을 건 설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건축물 층수를 15층 이하로 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관리지역 내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임대주택을 건설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별도의 층수제한을 두지 않 는다.</u></p>	<p>제34조(제2종일반주거지역내 가 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 도시 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 물 층수를 완화할 수 있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삭 제></u></p>